시 보

선	기관의 장
Ľ	
람	

all ways INCHEON

제1740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고	시		
○ 인천-	광역시고시	제2019-85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3
○ 인천	광역시고시	제2019-86호 도시관리계획(연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 인천	광역시고시	제2019-88호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20
○ 인천	광역시고시	제2019-89호 굴포천 하천공사 준공 고시	25
○ 인천	광역시고시	제2019-91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28
○ 인천	광역시고시	제2019-92호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전부개정	30
○ 있청	광역시고시 시시계하	제2019-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56호선), 완충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 인가 고시 ···································	32
시티	크시계식	한당) 한기 포지 ···································	
공	고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51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34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52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35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55호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36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62호 공시송달공고	38
○ 입천	광역시공고 공고	. 제2019-870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43
		. 제2019-87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67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68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79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69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71
○ 인천	광역시공고	. 제2019-888호 인천광역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7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ΟĮ	벼	M	\Box
Н	н	νп	-1-

- TITMI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7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3
이처과여시이버에고 제2010_29층 이처과여시 지역형시험이히 서비 미 으여 그치 페지그치(아)	77
	7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0호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81
마다에고 이처과여시이히고고 제2010-06층 이처과여시 치메과리 미 과여치메세터 서치,으여 조례	114
이처과여니이하고그 제2010-07층 이처과여니 어개 미 하므다토차 우스나어버 이바해이에 대하	12:
	1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99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00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150
기타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9-186호 직인(인장) 폐기 공고 1	1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85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 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보유자(차영녀) 사망에 따른 인 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해제대상

지정번호	문화재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정일	해제일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차영녀	여	1936. 1.15.	1988.12.24	2019. 3.26

2. 해제사유 : 사망

3.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주 소 : (22233)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

▷ 연락처 : 전화 032-440-8084, 팩스 032-440-809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86호

도시관리계획(연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032-440-3657), 계양공원사업소 (서부공원담당, 032-458-7182), 서구청(공원녹지과, 032-560-449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 연희 근린공원)
-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 3. 면 적: 1,032,165.5 m²
- 4. 도시계획시설(연희 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시설율 : 24.2%, 건폐율 : 0.23%)

					변 7	형 전					변 경	· 후			
	3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	연면적 (m²)	(기)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	연면적 (m²)	(기)	,
		계	1,032,165.5	_	_	_	_	_	1,032,165.5	_	_	-	-	-	-
		계	1,032,165.5	232,460	8	1,575	2,430	98	960,392.5	232,826	11	2,200	3,195	149	중)366㎡ 건축 중)625㎡
	- 1 1	기 소 계	51,601	51,601	-	-	_	-	47,830	47,830	-	-	-	-	감)3,771 m²
		반 도로	44,377	44,377	-	-	_	-	40,080	40,080	-	-	-	-	감)4,297 m²
공	. .	설 광 장	7,224	7,224	-	-	-	-	7,750	7,750	-	-	-	-	증)526m²
		조경시설	69,442	69,442	_	-	-	10	99,422	99,422	-	-	-	-	증)29,980m²
원		휴양시설	7,590	7,590	-	-	-	64	8,498	8,498	-	-	-	113	증)908m²
		유희시설	1,860	1,860	-	-	-	-	1,452	1,452	-	-	-	2	감)408m²
시		운동시설	6,260	6,260	-	-	-	1	2,960	2,960	-	-	-	1	감)3,300 m²
설		교양시설	28,377	28,377	1	855	1,710	-	12,405	12,405	2	1,055	1,910	-	감)15,972㎡ 건축 증)200㎡
		편익시설	14,500	14,500	5	440	440	3	10,129	10,129	6	480	480	4	감)4,371 m² 건축 증)40 m²
		관리시설	6,280	6,280	2	280	280	20	3,580	3,580	3	665	805	29	감)2,700㎡ 건축 증)385㎡
		도시농업 시설	46,550	46,550	_	-	-	-	46,550	46,550	_	-	-	-	-
녹	· ス]	및 기타	799,705.5	-	_	-	_	-	727,566.5	_	_	-	-	-	감)72,139 m²
F	미급	3원시설	-	_	-	-	_	-	71,773	-	_	-	-	-	중)71,773㎡
		•기 정	- 시설율 : 2	22.5% · 놀	두지율 :	77.5% · 2	건폐율 : 0.1	5%	· 변	경 - 시설율	÷ : 24.2%	· 녹지율	로 : 75.8%	• 건폐율	: 0.23%

나. 시설조서

					변 경	7	<u> 년</u>							변 경	후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ュ		건축돌	₹ (m²)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될	号(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m²)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부호	위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합 계	_	-	1,032,165.5	232,460.0	ı	ı	1,575	2,430	98	_	-	1,032,165.5	232,826	-	ı	2,200	3,195	149	중)366㎡ 건축 중)625㎡
	소 계	-	-	51,601	51,601	ı	ı	-	-	_	_	-	47,830	47,830	-	ı	_	_	_	감)3,771 m²
	도 로	_	-	44,377	44,377	1	-	-	_	-	_	_	40,080	40,080	_	ı	_	_	_	감)4,297 m²
	광 장	가	-	7,224	7,224	-	-	-	-	-	가	-	7,750	7,750	-	-	_	-	_	증)526m²
	동측진입광장	가-1	-	(1,416)	(1,416)	-	_	_	_	_	가-1	_	(1,416)	(1,416)	_	-	_	_	_	
	서측진입광장	가-2	-	(2,100)	(2,100)	_	-	-	-	-	-	-	_	_	_	-	-	-	_	
	연희마당	-	-	-	-	-	-	-	_	-	가-2	-	(1,852)	(1,852)	_	-	_	-	_	
도 로	북측진입광장	가-3	=	(563)	(563)	_	=	-	-	-	가-3	-	(563)	(563)	_	=	-	-	-	
및	광장1	フト-4	-	(1,033)	(1,033)	-	-	-	-	-	가-4	-	(1,033)	(1,033)	-	-	-	-	-	
광 장	광장2	가-5	=	(961)	(961)	_	-	-	=	-	가-5	-	(961)	(961)	_	-	-	-	-	
	광장3	가-6	-	(500)	(500)	_	-	-	_	-	가-6	-	(500)	(500)	_	-	-	-	_	
	광장4	フト-7	=	(651)	(651)	-	-	-	-	-	フト-7	-	(651)	(651)	_	-	-	-	-	
	광장5	-	-	-	=	-	-	-	-	-	가-8	-	(452)	(452)	-	-	-	-	-	
	광장6	-	-	-	_	-	_	-	-	_	가-9	_	(184)	(184)	-	-	_	_	_	
	광장7	-	-	-	=	-	-	-	-	-	가-10	-	(95)	(95)	-	-	-	-	-	
	광장8	-	-	_	-	_	-	_	-	-	가-11	_	(43)	(43)	_	-	_	_	_	

					변 경	ļ	전							변 경	ই	<u>}</u>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돌	를 (m²)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ے		건축될	를 (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m²)	시설년식 (m²)	구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부호	위 치	수시현식 (m²)	시설인석 (m²)	구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소 계	_	-	69,442	69,442	2 -	-	_	-	10	_	_	99,422	99,422	-	_	_	_	_	중)29,980 m²
	자연마당	나	-	69,442	69,442	2 -	-	-	_	-	나-1	-	69,442	69,442	-	-	-	-	_	-
	향기원	_	_	-	-	-	-	_	_		나-2	_	500	500	-	_	_	_	_	증)500 m²
	테마정원	_	-	_	-	-	-	-	_		나-3	-	1,682	1,682	-	-	_	-	-	증)1,682 m²
	블루밍정원	-	-	-	-	-	-	-	-	-	나-4	-	2,870	2,870	_	-	-	-	_	증)2,870 m²
	가족마당 (잔디광장)	_	_	-	-	-	-	-	_	-	나-5	-	5,162	5,162	-	-	_	-	_	증)5,162 m²
	편백숲길	_	-	-	-	-	-	-	_	-	나-6	-	1,755	1,755	-	-	-	-	-	증)1,755㎡
조 경 시 설	그늘정원	_	_	-	-	-	-	-	_	-	나-7	-	1,600	1,600	-	-	-	_	-	증)1,600 m²
기 연	고유정원	_	-	-	-	-	-	-	_	-	나-8	-	907	907	-	-	-	_	_	증)907 m²
	창포정원	_	-	-	-	-	-	-	-	-	나-9	-	6,643	6,643	-	-	-	-	-	증)6,643 m²
	연꽃원	-	-	-	-	-	-	-	-	-	나-10	-	1,957	1,957	_	-	-	-	-	증)1,957 m²
	단풍정원	-	-	-	-	-	-	-	-	-	나-11	=	1,345	1,345	-	-	-	-	_	증)1,345㎡
	이야기정원	_	-	-	_	-	-	-	-	-	나-12	-	3,598	3,598	-	_	-	-	_	증)3,598㎡
	대모잠자리습지	_	-	-	-	-	-	-	_	-	나-13	-	1,961	1,961	_	-	-	-	_	증)1,961 m²
	관상용식수대	1	-	-	-	-	_	-	_	10	_	_	-	-	-	-	_	_	_	-

					변 경		전							변 경	후	_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정	구		건축될	₹ (m²)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될	를 (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소 계	-	-	7,590	7,590	-	-	-	-	64	_	_	8,498	8,498	-	-	_	-	113	중)908㎡
	쉼 터	다	_	7,590	7,590	-	-	-	_	-	다	-	8,498	8,498	-	_	-	-	-	증)908m²
	쉼터1 (명상의숲)	다-1	-	(424)	(424)	-	_	_	_	-	다-1	-	(1,023)	(1,023)	-	_	-	-	-	
	쉼터2	다-2	-	(500)	(500)	-	_	_	-	-	다-2	-	(500)	(500)	-	_	-	_	-	
	쉼터3	다-3	-	(310)	(310)	-	_	-	-	-	다-3	_	(310)	(310)	-	_	_	_	_	
	쉼터4	다-4	_	(470)	(470)	_	_	-	_	-	다-4	_	(470)	(470)	_	_	-	-	_	
	쉼터5	다-5	-	(300)	(300)	-	-	-	_	-	다-5	-	(300)	(300)	_	_	-	-	_	
휴 양	쉼터6	다-6	_	(390)	(390)	-	-	-	_	-	다-6	_	(390)	(390)	_	-	-	-	_	
시설.	쉼터7	다-7	=	(410)	(410)	-	-	-	_	-	다-7	_	(410)	(410)	_	-	-	-	_	
	쉼터8	다-8	=	(500)	(500)	-	-	-	_	-	다-8	_	(500)	(500)	_	-	-	-	_	
	쉼터9	다-9	=	(2,940)	(2,940)	-	-	-	_	-	다-9	_	(2,940)	(2,940)	_	-	-	-	_	
	쉼터10 (피크닉장)	다-10	-	(1,346)	(1,346)	-	_	_	_	_	다-10	-	(1,201)	(1,201)	-	_	_	_	_	
	쉼터11 (놀이터)	-	_	_	_	-	-	-	-	-	다-11	_	(119)	(119)	_	-	-	-	-	
	쉼터12 (산마루쉼터)	_	_	_	_	-	_	-	-	-	다-12	_	(163)	(163)	-	_	-	-	-	
	설터13 (산아래쉼터)	_	-	-	-	_	_	_	_	_	다-13	_	(172)	(172)	_	_	_	_	-	

- 분					변경	•	전							변 경	-2	<u>†</u>				
	시설명			부지면적	시선며전	マ		건축물	∄ (m²)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며전	구		건축물	물 (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가제보	-	_	-		-	_	_	_	_	1	_	_	_	-	-	_	_	6	
	파고라	2	-	-	_	-	-	-	-	36	2	_	_	_	-	-	-	-	14	
	앉음벽	3	=	-	-	-	-	=	-	4	3	-	-	-	-	-	-	=	5	
두 양	등의자	4	-	-	_	-	-	-	-	24	4	_	_	_	-	-	-	-	48	
] 설	야외테이블	-	-	-	-	-	-	-	-	-	5	-	-	_	-	-	-	-	16	
	장식벽	-	-	-	-	-	-	-	_	_	6	-	_	-	-	-	-	-	4	
	평상	_	-	-	-	-	-	-	-	-	7	-	_	-	-	-	_	-	20	
	소 계	_	-	1,860	1,860	_	_	_	_	_	-	_	1,452	1,452	_	-	-	_	2	감)408n
	어린이놀이터	라	_	1,860	1,860	_	_	_	_	_	라	_	1,452	1,452	_	_	_	_	_	
	어린이놀이터1	라-1	_	(740)	(740)	_	_	_	_	_	라-1	_	(740)	(740)	_	1	-	_	_	
가 희] 설 	어린이놀이터2	라-2	_	(1,120)	(1,120)	_	_	_	_	_	라-2	_	(712)	(712)	_	ļ	_	_	_	감)408m
	무장애놀이시설	_	_	-	-	_	_	-	_	_	8	_	_	_	_	l.	-	_	1	증)1기
	숲체험시설	-	-	-	-	_	_	-	_	-	9	_	-	-	_	-	-	-	1	증)1기

					변 경	3	전							변 경		<u>후</u>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	구 조	규모	건축될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비고
	소 계	-	_	6,260	6,260	ı	_	_	_	1	-		2,960	2,960	-	_	-	-	1	감)3,300 m²
	운동공간	마	-	6,260	6,260	-	-	_	-	-	마	-	2,960	2,960	-	-	-	-	-	_
운 동	다목적운동장1	ㅁ}-1	-	(2,160)	(2,160)	-	-	_	-	-	-	-	-	-	-	-	-	-	-	감)2,160 m²
시 설	다목적운동장2	마-2	-	(2,960)	(2,960)	-	-	-	-	-	마-1	-	(2,960)	(2,960)	-	-	-	-	-	-
	농 구 장	마-3	-	(1,140)	(1,140)	-	-	-	-	-	-	-	_	_	-	-	-	-	-	감)1,140 m²
	체력단련시설	5	-	_	_	-	-	-	-	1	10		_	_	-	-	-	-	1	-3)47.070
	소 계	_	_	28,377	28,377	-	_	855	1,710	_	_	_	12,405	12,405	-	_	1,055	1,910	-	감)15,972㎡ 건축 중)200㎡
	교양공간	바	_	28,377	28,377	-	_	_	_	_	바	_	12,405	12,405	_	_	1,055	1,910	-	감)15,972㎡ 건축 증)200㎡
	화 훼 원	바-1	-	(2,473)	(2,473)	-	_	_	_	-	바-1	_	(2,473)	(2,473)	-	-	-	_	_	
	다목적학습장 (자연학습장등)	바-2	-	(2,388)	(2,388)	-	-	(855)	(1,710)	-	바-2	-	(2,388)	(2,388)		-	(855)	(1,710)	-	
	조류생태학습장	바-3	_	(10,062)	(10,062)	-	_	_	_	_	_	_	_	_	_	_	_	_	_	
	금개구리연못	-	-	-	-	-	-	_	_	_	바-3	-	(1,388)	(1,388)	-	_	-	_	_	
교양	야외학습장	바-4	_	(1,464)	(1,464)	-	_	_	_	_	_	_	_	_	_	_	_	_	_	
	논생태관찰데크	-	-	-	-	-	-	-	-	-	바-4	-	(684)	(684)	-	-	-	-	-	
시 설	역사교육장	바-5	-	(10,100)	(10,100)	-	-	-	-	-	-	-	-	-	-	-	-	-	-	
	나래길	-	_	-	_	-	_	-	-	_	바-5	_	(703)	(703)	-	-	-	-	-	
	유아숲체험장	-	-	-	-	_	-	-	-	_	바-6	-	(1,633)	(1,633)	-	-	-	-	-	
	숲관찰데크	-	-	-	-	-	-	_	-	_	바-7	_	(198)	(198)	_	_	_	-	_	
	숲관찰대	바-6	-	(790)	(790)	_	-	-	-	-	바-8	-	(790)	(790)	_	-	-	-	-	
	어린이정원	-	-	-	-	_	-	-	-	-	ㅂ}-9	-	(1,948)	(1,948)	_	-	-	-	-	
	가든센터(온실)	-	_	-	-	-	-	_	_	_	바-10	-	(200)	(200)	_	_	(200)	(200)	_	

					변 경		전							변 경	Ť	Ĕ				
구 분	·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님	물 (m²)	공작물	_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물	를 (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7))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소 계	-	_	14,500	14,500	-	-	440	440	3	_	-	10,129	10,129	-	-	480	480	4	감)4,371㎡ 건축 중)40㎡
	주 차 장	사	-	12,620	12,620	_	-	-	_	-	사	_	8,306	8,306	_	-	_	_	_	감)4,314m²
	서측주차장1	사-1	_	(6,750)	(6,750)	-	-	_	_	-	사-1	-	(1,616)	(1,616)	_	-	-	_	-	-
	서측주차장2	-	-	-	_	-	-	_	-	-	사-2	-	(820)	(820)	_	-	-	-	-	-
	동측주차장	사-2	-	(5,870)	(5,870)	-	-	-	-	-	사-3	-	(5,870)	(5,870)	-	-	-	-	-	
	화장실	아	-	880	880	-	-	440	440	-	아	-	753	753	-	_	480	480	-	감)127㎡ 건축 증)40㎡
편 익	남서측화장실	아-1	_	(220)	(220)	-	-	(100)	(100)	-	야-1	_	(110)	(110)	_	_	(70)	(70)	_	_
נג וג	북측화장실	야-2	-	(220)	(220)	-	-	(100)	(100)	-	아-2	_	(220)	(220)	-	-	(100)	(100)	-	-
시 설	동측화장실	아-3	-	(220)	(220)	-	-	(100)	(100)	-	o}-3	-	(220)	(220)	-	-	(100)	(100)	-	-
	남측화장실	아-4	-	(110)	(110)	-	-	(70)	(70)	-	o}-4	-	(110)	(100)	-	-	(70)	(70)	-	-
	서측화장실1	아-5	_	(110)	(110)	-	-	(70)	(70)	-	아-5	_	(90)	(90)	-	-	(70)	(70)	_	_
	서측화장실2	-	_	_	_	_	_	ı	_	-	아-6	_	(73)	(73)	_		(70)	(70)	_	-
	전망대	자	_	1,000	1,000	_	-	-	-	-	자	-	1,000	1,000	-	-	_	_	-	_
	연결브릿지	6	=	-	-	-	-	=	-	1	11)	-	-	-	-	=	-	=	1	-
	자전거보관대	7	-	-	-	-	-	-	-	2	12	_	-	_	-	-	_	_	3	증)1기
	소 계	_	_	6,280	6,280	-	_	280	280	20	_	_	3,580	3,580	_	-	665	805	29	감)2,700㎡ 건축 중)380㎡
	관리사무소	차	-	3,070	3,070	_	-	280	280	-	차	_	3,580	3,580	_	-	640	780	_	증)510㎡ 건축 증)360㎡
	관리사무소1	차-1	-	(1,790)	(1,790)	-	-	(120)	(120)	-	차-1	-	(1,790)	(1,790)	_	_	(120)	(120)	-	-
관 리	관리사무소2	-	_			-	_	_	_	_	차-2	_	(510)	(510)	-	_	(385)	(525)	_	-
시 설	관리사무소3	차-2	-	(1,280)	(1,280)	-	-	(160)	(160)		차-3	-	(1,280)	(1,280)	-	-	(160)	(160)	-	-
	관리차고	카	-	3,210	3,210	_	-	-	-	-	-	-	-	-	-	-	-	-	-	감)3,210 m i
	안내판	8	-	-	-	-	-	-	-	15	13	-	-	-	-	-	-	-	22	-
	생태안내판	9	_	-		-	-	_		5	14)	_	-	_	-	_	_	_	7	-

					변 경	্	<u>1</u>							변 경	亨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물	<u>.</u> (m²)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マ		건축될	₹ (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부호	위 치	(m²)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 적	(기)	
	소 계	_	_	46,550	46,550	_	_	-	_	_	_	_	46,550	46,550	_	_	-	-	_	_
	농업공간	타	_	46,550	46,550	-	-	-	-	_	타	_	46,550	46,550	_	_	-	-	_	-
도 시	도시텃밭1	타-1	_	(3,570)	(3,570)	_	_	ı	_	_	타-1	_	(3,570)	(3,570)	_	_	_	-	_	-
농 업	도시텃밭2	타-2	_	(6,330)	(6,330)	_	-	ı	_	_	타-2	_	(6,330)	(6,330)	-	_	_	ı	_	_
시 설	도시텃밭3	타-3	_	(18,870)	(18,870)	-	-	-	_	_	타-3	_	(18,870)	(18,870)	_	_	_	-	_	_
	작목원	타-4	_	(14,120)	(14,120)	_	-	-	_	_	타-4	_	(14,120)	(14,120)	-	_	_	-	_	_
	도시농업용온실	타-5	-	(3,660)	(3,660)	_	_	1	_	_	타-5	_	(3,660)	(3,660)	_	_	-	1	_	-
	녹 지	_	-	799,705.5	_	_	-	-	-	-	-	_	727,566.5	_	_	_	-	-	_	감)72,139㎡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n	-	9,733	44,377	-	-	-	71) 4 007 3
변경	합		계	_	10,870	40,080	-	-	-	감)4,297 m²
기정	,		-n	-	270	3,240	-	-	-	71\0.040 *
변경	소		계	_	_	-	-	-	-	감)3,240 m²
기정	スコ	3	1	12	270	3,240	진입로	서측출입구	서측주차장	71.\0.0402
폐지	중로	-	-	-	_	_	_	-	-	감)3,240 m²
신설	소		계	9	210	1,890	-	-	-	증)1,890 m²
신설	중로	2	1	9	210	1,890	진입로	서측출입구	서측주차장	증)1,890 m²
기정	소		계	-	8,991	40,193	-	-	-	감)6,478㎡
변경	- 3 <u>.</u>		세	_	8,389	33,715	-	-	ı	石 /0,470III
기정	소로	3	1	6	1,285	7,710	연결로	동측지구계	서측진입구	변경없음
변경	工工	3	1	6	1,285	7,710	연결로	동측지구계	서측진입구	位/6 以口
기정	소로	3	2	3	181	543	연결로	쉼터9	소로3-51	변경없음
변경	-11-	3	2	3	181	543	연결로	쉼터9	소로3-51	COME
기정	소로	3	3	6	19	114	연결로	소로3-23	소로3-2	변경없음
변경		3	3	6	19	114	연결로	북측지구계	소로3-2	COMB
기정	소로	3	4	6	328	1,968	연결로	서측지구계	서측지구계	감)1,644㎡
변경		3	4	4	81	324	연결로	소로3-12	북서측지구	71,044III
기정	소로	3	5	6	27	162	연결로	소로3-4	서측진입광장	증)24㎡
변경		3	5	3	62	186	연결로	소로3-6	소로3-11	0 /2 4 111
기정	소로	3	6	6	450	2,700	연결로	중로3-1	소로3-4	감)2,208 m²
변경		3	6	3	164	492	연결로	소로3-20	소로3-5	д /2,200 m
기정	소로	3	7	6	83	498	연결로	서측진입광장	소로3-4	변경없음
변경		3	7	3	166	498	연결로	쉼터13	광장5	COMP
기정	소로	3	8	4	268	1,072	연결로	중로3-1	소로3-1	감)970m²
변경		3	8	3	34	102	연결로	소로3-20	소로3-10	д / 01 0m
기정	소로	3	9	6	70	420	연결로	소로3-1	관리사무소1	변경없음
변경		3	9	6	70	420	연결로	소로3-1	관리사무소1	C 0 W L
기정	소로	3	10	6	21	126	연결로	서측진입광장	소로3-4	증)3m²
변경		3	10	3	43	129	연결로	소로3-8	소로3-7	0 /OIII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 -7	3	11	6	731	4,386	연결로	소로3-4	만남광장5	=1\\0.050 ·
변경	소로	3	11	6	186	1,116	진입로	동측지구계	소로3-5	감)3,270 m²
기정	, =	3	12	4	547	2,188	연결로	북서측지구계	동측지구계	7] \ 450 3
변경	소로	3	12	4	443	1,732	연결로	북서측지구계	소로3-4	감)456 m²
기정) I	3	13	3	150	450	연결로	만남광장2	만남광장3	버거신ㅇ
변경	소로	3	13	3	150	450	연결로	만남광장2	만남광장3	변경없음
기정) =	3	14	3	132	396	연결로	만남광장2	소로3-14	버커싱싱
변경	소로	3	14	3	132	396	연결로	만남광장2	소로3-14	변경없음
기정	λ コ	3	15	4	194	776	연결로	만남광장4	소로3-48	버거어ㅇ
변경	소로	3	15	4	194	776	연결로	만남광장4	소로3-48	변경없음
기정	入口	3	16	4	210	840	연결로	동측지구계	쉼터3	버거어ㅇ
변경	소로	3	16	4	210	840	연결로	동측지구계	쉼터3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7	4	94	376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17	버거어ㅇ
변경	꼬노	3	17	4	94	376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17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8	3	(296)	(888)	연결로	소로3-28	자연마당	변경없음
변경	エエ	3	18	3	(296)	(888)	연결로	소로3-28	자연마당	也分畝市
기정	소로	3	19	4	22	88	진입로	서측지구계	중로3-1	7k\\9.4 m²
변경	エエ	3	19	4	16	64	진입로	산책로39	소로3-7	감)24m²
기정	入口	3	20	3	72	216	연결로	소로3-6	소로3-6	ろ)1 25C?
변경	소로	3	20	3	524	1,572	연결로	소로3-6	소로3-25	증)1,356㎡
기정	λ =	3	21	3	41	123	연결로	야외학습장	소로3-23	7]. \ 4⊏²
변경	소로	3	21	3	26	78	연결로	광장7	소로3-29	감)45 m²
기정	人口	3	22	3	46	138	연결로	야외학습장	조류생태학습장	7 ↓ \01²
변경	소로	3	22	3	19	57	연결로	소로3-23	소로3-29	감)81 m²
기정	人曰	3	23	3	74	222	연결로	서측지구계	소로3-6	71.\CE2
변경	소로	3	23	3	49	157	연결로	소로3-20	소로3-22	감)65 m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3	24	3	192	576	연결로	소로3-6	소로3-6	7)10
변경	소로	3	24	3	198	594	연결로	광장6	소로3-29	증)18m²
기정	, =	3	25	3	118	354	연결로	중로3-1	소로3-24	Z)000 %
변경	소로	3	25	6	114	684	연결로	소로3-32	소로3-29	· 증)330m²
기정	, -7	3	26	4	(80)	(320)	연결로	소로3-33	소로3-43	77 71 61 6
변경	소로	3	26	4	(80)	(320)	연결로	소로3-33	소로3-43	변경없음
기정	, -7	3	27	3	(75)	(225)	연결로	자연마당	자연마당	71 -3 A) A
변경	소로	3	27	3	(75)	(225)	연결로	자연마당	자연마당	변경없음
기정	, -7	3	28	3	(114)	(342)	연결로	소로3-11	자연마당	77 71 61 6
변경	소로	3	28	3	(114)	(342)	연결로	소로3-11	자연마당	변경없음
기정	, =	3	29	3	16	48	연결로	서측주차장	중로3-1	Z\0.050
변경	소로	3	29	4	601	2,404	연결로	연희마당	광장5	- 증)2,356 m²
기정	,	3	30	3	23	69	연결로	서측주차장	중로3-1	7)000 3
변경	소로	3	30	3	224	672	연결로	연희마당	소로2-1	증)603 m²
기정	, =	3	31	3	209	627	연결로	중로3-1	소로3-33	71.070
변경	소로	3	31	3	83	249	연결로	용머리숲	소로3-30	급)378㎡
기정	, =	3	32	5	1,105	5,525	연결로	쉼터3	소로3-6	71)1 005 2
변경	소로	3	32	4-6	744	3,720	연결로	쉼터3	소로3-25	감)1,805 m²
기정	, =	3	33	3	165	495	연결로	소로3-1	만남광장1	ul 크 스l 스
변경	소로	3	33	3	165	495	연결로	소로3-1	만남광장1	변경없음
기정	,	3	34	3	48	144	연결로	소로3-14	만남광장3	14 71 A1 A
변경	소로	3	34	3	48	144	연결로	소로3-14	만남광장3	변경없음
기정	, –	3	35	3	33	99	연결로	소로3-16	쉼터4	
변경	소로	3	35	3	33	99	연결로	소로3-16	쉼터4	변경없음
기정	,	3	36	3	21	63	연결로	소로3-37	만남광장3	과 권 A) A
변경	소로	3	36	3	21	63	연결로	소로3-37	만남광장3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³)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 -7	3	37	4	69	276	연결로	만남광장4	만남광장2	ما جا ما م
변경	소로	3	37	4	69	276	연결로	만남광장4	만남광장2	변경없음
기정	, -	3	38	3	113	339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쉼터3	77 -1 41 4
변경	소로	3	38	3	113	339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쉼터3	변경없음
기정	, –	3	39	4	93	372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17	17 7 A) A
변경	소로	3	39	4	93	372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17	변경없음
기정	, –	3	40	6	20	120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자연학습장	77 - 1 41 4
변경	소로	3	40	6	20	120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자연학습장	변경없음
기정	, -	3	41	4	(124)	(496)	연결로	소로3-17	소로3-27	77 77 61 6
변경	소로	3	41	4	(124)	(496)	연결로	소로3-17	소로3-27	변경없음
기정	, =	3	42	3	242	726	연결로	소로3-27	소로3-33	77 -3 61 6
변경	소로	3	42	3	242	726	연결로	소로3-27	소로3-33	변경없음
기정	> -1	3	43	3	817	2,451	연결로	소로3-1	소로3-1	w
변경	소로	3	43	3	817	2,451	연결로	소로3-1	소로3-1	변경없음
기정	> =	3	44	6	89	534	연결로	소로3-8	역사교육장	1\\0.40 · *
변경	소로	3	44	3	62	186	연결로	소로3-30	소로3-30	감)348 m²
기정	> -1	3	45	3	178	534	연결로	쉼터6	쉼터7	w
변경	소로	3	45	3	178	534	연결로	쉼터6	쉼터7	변경없음
기정	` -	3	46	6	13	78	진입로	서측지구계	서측진입광장	7)100 *
변경	소로	3	46	6	34	204	연결로	소로2-1	소로3-1	증)126 m²
기정		3	47	6	35	210	연결로	소로3-49	다목적구장2	- 1 - 1 - 1 - 0
변경	소로	3	47	6	35	210	연결로	소로3-49	다목적구장2	변경없음
기정	,	3	48	3	98	294	연결로	다목적구장2	소로3-48	W = 1 & 1 &
변경	소로	3	48	3	98	294	연결로	다목적구장2	소로3-48	변경없음
기정	,	3	49	3	4	12	진입로	북측지구계	만남광장3	1 42 A
변경	소로	3	49	3	4	12	진입로	북측지구계	만남광장3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³)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3	50	3	120	360	연결로	남측지구계	소로3-44	-2 -2 -2 -2
변경	소로	3	50	3	120	360	연결로	남측지구계	소로3-44	변경없음
기정	` -	3	51	3	125	375	연결로	북측지구계	소로3-12	, , , , , , , , , , , , , , , , , , ,
변경	소로	3	51	3	125	375	연결로	북측지구계	소로3-12	변경없음
기정			-11	_	472	944				Z\0.501 °
변경	<u> </u>	2	계	_	2,240	4,475				· 증)3,531 m²
기정	ر الدار	-	1	2	93	186	산책로	소로3-14	소로3-15	N T A A A
폐지	산책로	_	1	2	93	186	산책로	소로3-14	소로3-15	변경없음
기정	2] =1] →	-	2	2	25	50	산책로	소로3-15	산책로1	과국 A A
변경	산책로	_	2	2	25	50	산책로	소로3-15	산책로1	변경없음
기정) =1) =	-	3	2	15	30	산책로	소로3-15	산책로1	IJ코OJ O
변경	산책로	-	3	2	15	30	산책로	소로3-15	산책로1	변경없음
기정)1=11=	-	4	2	40	8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과국 A A
변경	산책로	-	4	2	40	8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변경없음
기정) =1) =	-	5	2	20	4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및 권신 Q
변경	산책로	-	5	2	20	4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변경없음
기정) =i) ¬	-	6	2	(70)	(140)	산책로	자연마당	산책로7	보건(A) (A
변경	산책로	_	6	2	(70)	(140)	산책로	자연마당	산책로7	변경없음
기정	x]∋]]⊐	-	7	2	(395)	(790)	산책로	소로3-28	소로3-29	버건어O
폐지	산책로	_	7	2	(395)	(790)	산책로	소로3-28	소로3-29	변경없음
기정	al all =	-	8	2	(84)	(168)	산책로	자연마당	동측지구계	보건이 O
변경	산책로	_	8	2	(84)	(168)	산책로	자연마당	동측지구계	변경없음
기정) =1) =1	-	9	2	(126)	(252)	산책로	소로3-19	산책로7	및 되신 Q
변경	산책로	_	9	2	(126)	(252)	산책로	소로3-19	산책로7	변경없음
기정	x] =n →	_	10	2	(125)	(250)	산책로	자연마당	소로3-28	버권신스
폐지	산책로	_	10	2	(125)	(250)	산책로	자연마당	소로3-28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³)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1 =n =	-	11	1.5	(200)	(300)	산책로	소로3-42	소로3-28	-11 =1 (A) (A
변경	산책로	_	11	1.5	(200)	(300)	산책로	소로3-42	소로3-28	변경없음
기정	v1 =n =-	_	12	2	96	192	산책로	관리사무소1	소로3-1	
변경	-산책로	_	12	2	96	192	산책로	관리사무소1	소로3-1	변경없음
기정		_	13	2	64	128	산책로	소로3-1	산책로12	
변경	산책로	_	13	2	64	128	산책로	소로3-1	산책로12	변경없음
기정		_	14	2	(28)	(56)	산책로	소로3-29	산책로6	
변경	산책로	_	14	2	(28)	(56)	산책로	소로3-29	산책로6	변경없음
기정		_	15	2	107	214	산책로	소로3-34	소로3-1	
변경	산책로	_	15	2	107	214	산책로	소로3-34	소로3-1	변경없음
기정		_	16	2	12	24	산책로	소로3-35	소로3-34	
변경	"산책로		16	2	12	24	산책로	소로3-35	소로3-34	변경없음
신설	산책로	_	17	2	51	102	산책로	산책로18	소로3-4	증)102m²
신설	산책로	_	18	2	373	746	산책로	소로3-6	쉼터12	증)746 m²
신설	산책로	_	19	2	266	532	산책로	광장8	소로3-7	증)532 m²
신설	산책로	-	20	2	9	18	산책로	소로3-19	광장5	증)18m²
신설	산책로	_	21	2	11	22	산책로	소로3-19	광장5	증)22m²
신설	산책로	_	22	2	36	72	산책로	단풍정원	소로3-29	증)72m²
신설	산책로	_	23	2	39	78	산책로	서측지구계	소로3-29	증)78m²
신설	산책로	-	24	2	28	56	산책로	소로3-29	나래길	증)56 m²
신설	산책로	-	25	2	51	102	산책로	나래길	소로3-23	증)102 m²
신설	산책로	-	26	2	22	44	산책로	광장7	소로3-29	증)44m²
신설	산책로	-	27	2	41	82	산책로	소로3-20	소로3-29	증)82 m²
신설	산책로	-	28	2	29	58	산책로	소로3-20	소로3-29	증)58m²
신설	산책로	_	29	2	42	84	산책로	소로3-20	소로3-29	증)84m²
신설	산책로	_	30	1.5	10	15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32	증)15m²
신설	산책로	-	31	2	175	350	산책로	소로3-24	소로3-29	증)350 m²
신설	산책로	_	32	2	360	720	산책로	소로3-24	소로3-29	증)720㎡
신설	산책로	=	33	2	13	26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32	증)26m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³)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	34	2	43	86	산책로	산책로35	산책로32	증)86m²
신설	산책로	-	35	2	24	48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36	증)48 m²
신설	산책로	-	36	2	29	58	산책로	소로3-24	산책로35	증)58m²
신설	산책로	-	37	2	70	140	산책로	소로3-24	소로3-24	증)140 m²
신설	산책로	-	38	2	46	92	산책로	산책로37	소로3-29	증)92m²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88호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50호, 2014. 12.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조성목적

- 도심지 공해업소의 집단이전으로 업종별 계열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고속도로 연변 폐염전 지대의 개발 활용

다. 추진경위

- 1965. 10. 19 공업지역 지정
- 1968. 1. 27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건설부고시제915호)
- 1970. 3.10 공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1973. 4. 1 인천지방 공업단지로 지정
- 1976. 11. 10 공업단지 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공단관리법 시행령 개정)
- 1979. 8. 10 관리대상 공업단지 면적 공고 (상공부 공고 제79-117호)
- 1982. 9. 20 인천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82. 10. 4 인천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 위임
- 1982. 10. 29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 (상공부 고시 제82-40호)
- 2005. 5. 26 인천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41호)
- 2009. 7. 6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11호)
- 2014. 12. 8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50호)

라. 분양현황

(단위: m²)

			분 양	가 능	면적			
구 분	총면적	ㅂ 아	П] 분	양	力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조성	미조성	소계	계		
인천지방 산업단지	1,136,269	1,001,373	_		_	1,001,373	'70. 3 ~ '73. 12	인천광역시

마. 입주현황

(2019. 2월말)

입주 🤇	기업체수(개사)		면 적(m²)		비고
계	제 조 업	지원기관	계	제 조 업	지원기관	
471	471		1,001,373	1,001,046	327	

바. 입주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4.5km, 15분)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접함.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상수도 사용)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 통 신 : KT에서 공급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입주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주업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점차 전환
- 수출증대와 생산성 항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시설의 자동화 추진, 신속한 정보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자 복지 후생의 지원
- 공해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해 업체의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 오염 최소화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 (66112) 부동산임대업(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업종(1-3종). 용수 대량 소비업종(1-3종).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입주를 제한한다.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관리권 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0조 단서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기업
- 지워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 입주 우선 순위
 - 비공업지역내 등록공장의 이전
 - 준공업지역 및 주택인접 지역의 등록공장의 이전
 - 비공업지역 및 주거밀집 지역내 무등록 공장
 - 기타 공장(신설공장 포함)
- 사후관리 계획
 - 입주 기업체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보급과 공장자동화의 확대 보급 등 기술 축적 지원
 -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 후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
 - 기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m²)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 시설구역	녹지구역
1,136,269	1,001,046	327	134,896	_

- 산업시설 구역 세부 용도

(단위 : m²)

	}시설 }도		정보통신산 업시설용도		물류시설 용도	공장및물류 시설용도	공장및전력 시설용도
764,	770.3	_	_	_	45,985	162,184.5	28,106.2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공장시설용도 :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물류시설용도 :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 시설관련 건축물
 - 공장시설용도 및 물류시설용도 : 공장시설 용도와 물류시설 용도의 관련 건축물
 - 공장시설용도 및 전력시설용도 : 공장시설 용도와 전력 시설용도의 관련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원시설 구역
 -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구획 평면도 : 붙임 1(참조)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 업종별 공장 배치 현황 및 배치도 : 생략

마. 산업용지 분할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붙임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범례 인천지방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구역 장 및 불류시설용도(복합용도) 용도별 구획 평면도 공장 및 전력시설용도(복합용도)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89호

굴포천 하천공사 준공 고시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준공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1. 하천공사의 명칭
 -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하천에 깨끗하고 안정적 인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하며, 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굴 포천을 되돌려주기 위함.
 - 개요
 - 유지용수 공급시설 : 연면적 1,809.23 m²
 -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용량 : 90,000m³/일
 - 송수관로 : L=734.4m (D900mm)
-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1번지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종합건설본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16년 6월 30일

○ 준공일 : 2019년 3월 27일

-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하수하천팀(☎ 032-440-5231)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지형도면 게재생략)
-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인천환경공단 위탁대행)이 유지·관리 시행

붙임: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순번	관련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유자	비고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 - 11	전	984	275.16	국토교통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71 - 1	구거	408	96.64	국토교통부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 - 12	답	686	233.21	국토교통부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 - 13	답	1171	426.15	국토교통부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 - 5	답	198	32.83	국토교통부	
6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71	구거	137	137	국토교통부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 - 1	답	362	362	인천광역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32 - 4	답	551	551	인천광역시	
9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5 - 15	구거	116	116	농림축산식품부	
10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659 - 6	답	195	195	인천광역시	
11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659 - 7	답	496	49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1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관리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62(만수동 409-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남동정수사업소 염소실 출입구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142,209 m²

○ 규모(건축연면적): 22,602.04m² → 22,753.07m² (증 151.03m²)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염소주입동 증축 지상 1층	[건축연면적] ·기 존 : 403.93㎡ ·증 축 : 151.03㎡ ·합 계 : 554.96㎡	금회 시행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남동정수사업소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62(만수동 409-5)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19. 10.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조서

ਨੀਮੀ	ા સ	ગ્રામા	면적(㎡)		소유자		비고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구분	비끄	
1	남동구 만수동	409-5	수	66,320	61,39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지	
2	남동구 만수동	417-4	전	3	3	김○○	사유지	
3	남동구 만수동	산74	임	58	58	김○○	사유지	
4	남동구 장수동	666	수	82,963	80,564	인천광역시	공유지	
5	남동구 장수동	산132-5	임	187	187	정○○	사유지	
계			149,531	142,209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2호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전부개정

「지방세기본법」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 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 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 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 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 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 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인천광역시고시 제1997-226호 (1997, 10, 1.)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56호선), 완충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56호선), 완충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0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명 칭		
о п	당 초	변 경	
○ 중로: 1-456호선 (364m) ○ 폐기물처리시설(2단계): 8,887㎡	㈜장형기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 녹지: 완충녹지 (10,221㎡)○ 폐기물처리시설(2단계): 185㎡	㈜순환골재협회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2단계): 512 m²	이경화학㈜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당 초	성명 및 주소 변 경
○ 중로: 1-456호선 (364m) ○ 폐기물처리시설(2단계): 8,887㎡	㈜장형기업 서구 마전동 639번지	㈜장형기업 서구 완정로92번길 41
○ 녹지: 완충녹지 (10,221㎡)○ 폐기물처리시설(2단계): 185㎡	㈜순환골재협회 서구 완정로 65안길10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2단계): 512m²	이경화학㈜ 서구 검단천로 155	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업체명	도시계획시설	사 업 기 간			
현 세 경	· 조기계획기결	당 초	변경		
㈜장형기업	도로(중1-456호선): 364m 폐기물처리시설: 8,887㎡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19.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20.12.31.		
(주)순환골재협회	완충녹지: 10,221㎡ 폐기물처리시설: 185㎡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19.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20.12.31.		
이경화학(주)	폐기물처리시설: 512㎡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19.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20.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변경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변경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51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 320187호	㈜현주 엔지니어링 고근명,이규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33, 상산프라자 802호 (계산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월 (2019.4.23.~ 2019.5.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52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 320285호	㈜일우 장 영 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67, 311호 (주안동, 월드빌)	2018.4.22.	자진폐업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855호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4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삿포모	•	샛확수비재	곴산포
	4100		O 큰 ㅗ '미'에.	

-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 식품·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 기업 당 최대 3품목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O), 운동화(X)

2. 지정기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3년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4. 29.(월) ~ 5.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97, nadaceo@korea.kr)

5. 신청서류

-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18년)

6. 추진절차



* 현장평가 및 제품 실물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10억원, 금리: 기본 + 0.5% 추가지원)
-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 미추홀 아이마켓 입점 우선 지원
- 인천시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및 인천e몰(모바일 쇼핑몰) 등록
-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62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4.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19-753호)

2. 공고기간 : 2019년 4월 23일 ~ 2019년 5월 7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당관 자동차 공매담당(☎ 032-440-844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김*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마길 ******승물산사옥)	서울45도3229	기타	
2	차⋆두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23번길 *****(석남동, 덕산 아파트)	33로4566	기타	
3	박*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 63*****호(숭의동, 라 인빌라)	28조1767	기타	
4	한⋆근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1길 5*****(궁동, 동양연립)	인천80머4488	폐문부재	
5	최*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04번길****** (산곡동, 우성맨션)	인천34러9461	기타	
6	김*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마길 ******승물산사옥)	서울45도3229	기타	
7	(*)오*금속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45번길 9******	86주 1025	수취인불명	
8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62******	83고1481	수취인불명	
9	오*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53번길*****동)	80716160	수취인불명	
10	강*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7*****호 (마전동, 영 남탑스빌아파트)	70저2374	수취인불명	
11	(*)황*수산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35번길 ******송현동)	70로5113	수취인불명	
12	양*욱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1번길 *******좌동, 대성맨 션)	70너5042	수취인부재	
13	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97번길******1호 (효성동, 청하하이츠빌라)	69노1377	폐문부재	
14	김*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59번******비01호 (부개동, 성연하이츠빌)	68무9624	기타	
15	(*)에스*이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55, ******	67루3984	수취인불명	
16	이*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0******창동)	61두8387	기타	
17	김*비(50%), 『홍*수(5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68,***** (청라동, 인천 청라 한일베라체)	60우8912	기타	
18	이*철(99%), 『이학수(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8******2호 (서창동, 청광플러스원아파트)	60다7692	기타	
19	배⋆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37-******)	53루4975	거주불명	
20	(*)다*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7길 ******노형동)	51두4323	수취인불명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21	이*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20번길 11, 101호 (병 방동, 대상월드빌)	48부1613	기타	
22	홍*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113-1, 6동 201호 (청천동, 장하주택)	47소6898	기타	
23	진*인(99%), 최*숙(1%)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64번길 36, 106동 1305 호 (산곡동, 뉴서울1차아파트)	46러8249	기타	
24	박*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74번길 95, 7동 203호 (십정동, 삼미빌라)	43주4165	기타	
25	나*민, 이*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53, 706호 (주안동)	43도8022	기타	
26	손*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5번길 9, 303호(경서동, 메트로시티빌)	20다9539	수취인불명	
27	(*)모*존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54, 502~3호 (논현동)	39012667	수취인불명	
28	나*민(99%), 나*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53, 706호(주안동)	36구4798	기타	
29	차*두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23번길 4, A동 211호(석 남동, 덕산아파트)	33로4566	기타	
30	서*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387번길 19, 3동 301호 (주안동, 해오름 1)	26오3158	기타	
31	조*철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57, 403동 202호 (검암 동, 삼보해피하임)	20도2064	폐문부재	
32	손*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5번길 9, 303호(경서동, 메트로시티빌)	20다9539	수취인불명	
33	강*남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 47 (을왕동)	16서3586	수취인불명	
34	0 *7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89번길 12-7 (십정동)	14소7288	기타	
35	백*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115동 1301호 (병 방동, 학마을서해.영남아파트)	13다5957	폐문부재	
36	신*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39, 104호(일동)	11무1388	기타	
37	김*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5, 9동 401호(삼산 동, 대보아파트)	10보2507	기타	
38	(*) 바*오트론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일반제조 101-805(삼정동)	10모7759	수취인불명	
39	광*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21 (만수동, 태화아파트및상가)	06부2363	수취인불명	
40	김*웅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산로58번길 3, 203호(방축 동)	05거5718	기타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그
41	0 *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8*****	03라5976	수취인불명	
42	김⋆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재길 5-3,****** 힐스토리3차)	인천34머888 8	폐문부재	
43	송*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33번길*****주안동)	90나7889	기타	
44	양*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93길******	83노4913	기타	
45	(*)나*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4*****	68거7221	기타	
46	김*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26번*******01호(도화동, LG메르디앙)	65019975	수취인불명	
47	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 2104호 (논 현동, 에코메트로6단지한화꿈에그린아파트)	62무6982	기타	
48	김*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113번****** (연수동)	56년 1141	수취인불명	
49	허⋆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 ****** (서창동, 서창 LH12단지)	50라5197	기타	
50	장*영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22번길 39*****동)	48부8002	기타	
51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26번길*****(간석동, 라임하우스)	48부1065	수취인불명	
52	정⋆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4,*****산동, 신동양아 파트)	45주3858	폐문부재	
53	(*)나*기술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61 (******	33누5859	수취인불명	
54	주* 이제*아이엔씨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보로 102-******	31무5088	수취인불명	
55	김*란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6-21,******)	27주3467	폐문부재	
56	김*길	경기도 김포시 양곡3로 129, ******양촌읍, 양곡휴먼 시아 곡촌마을)	13러7973	기타	
57	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587번****** 206호 (계산 동, 휴인아파트)	09우1607	폐문부재	
58	진*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	09부8123	수취인불명	
59	이*희외1인 (이*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79번*****	08나3969	기타	
60	이점욱(99%), 『홍인석(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76번길*****)	07주2822	기타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61	(의법)미추홀의료 재단계양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16 ******방동)	07018714	수취인불명	
62	장영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86,*****호 (중산동, 인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아파트)	06거6689	폐문부재	
63	김진동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3길 29 ******	02수3507	폐문부재	
64	조승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77번길******	50무2625	기타	
65	(주) 오렌지렌트카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87 ******	52허7518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70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 032-440-3653),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39 -872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2019.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2) 명 칭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3.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m²)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m²)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m²)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m²)	최 초 결정일
변경	장미 근린공원 2단계	공원	102,443	102,443	6,334	-	1944.01.08. (고시 제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사업시행자 : (당초)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변경)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2012. 9. 3. ~ 2019. 12. 31.까지 (변경) 2012. 9. 3. ~ 2021. 12. 31.까지(연장 2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붙임: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 토 지 조 서 (총괄)

연	よず [[す]	रोभो	7) 🗆	전체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	소재지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미끄
						강○○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1	연수구	137-1	전	1,672	1,672	강○○	인천 남동구 산석동				
1	1 연수구 연수동 137-1 7		<u></u>	1,072	1,072	강○○	인천 부평구 산곡동				
						강00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2	연수구 연수동	137-17	전	1,692	1,692	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	연수구 연수동	137-18	대	922	922	인천광역시					
4	연수구 연수동	137-19	전	2,048	2,048	인천광역시					

□ 지 장 물 조 서 (총괄)

일련	물건	소	대지		물긴	1		-량 ¹ 적)	LFOJ		소유자			이해관계인		HJ T
번호	번호	사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단위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1	연수동	137-1	출입문	철판	문 (H=1.8), L=5.4M	-	-	-	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1				
	2	연수동	137-1	담장	함석	담장 (H=1.8), L=0.8M	-	-	-	1 1100	인선생각시 남구 구인당	1/1				
	3	연수동	137-1	집수정	콘크리트	0.8*0.8, H1.0	-	0.64	m²	미확인						
										강ㅇㅇ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어스트	137-1	옹벽	석축	W0.3, H=0.3~0.7,		1.80	m²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김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차인	
	4 연수	연수동	137-1	89	<u> </u>	L=6.0M	_	1.60	III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400 	연수3동	임사인	
										강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1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5	연수동	137-1	작업장	철골/샌드	11.9*7.0, H2.5		83.30	m²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차인	
) J	연구공	137-1	식별성	귀시판일/ 천막	11.9*7.0, HZ.3	_	03.30	III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4	1/4	400 	연수3동	임사인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6	연수동	137-1	작업장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	1.1*0.5, H2.1	-	0.55	m²							
	7	연수동	137-1	차양	파이프 /함석	3.6*1.5, H2.1	_	5.40	m²	71.00		1 /1				
	8	연수동	137-1	자재 선반	파이프 /합판	2.6*0.5, H1.7	_	1.30	m²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1				
	9	연수동	137-1	자재 선반	파이프 /합판	3.1*0.5, H1.7	-	1.55	m²							

일련	물건	소	대지		물건	<u>'1</u>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u)
번호	번호	ᅜ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단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_ㅂ]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10	어스트	107 1	∌l. −7	파이프	0.0.4.0.110.5		22.00	2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인천광역시 연수구	01-21-01	
	10	연수동	137-1	창고	/천막	8.0*4.2, H2.5	_	33.60	m²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김○○	연구구	임차인	
									강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1:	11	연수동	137-1	창고	컨테이너	6.0*3.1, H2.5	-	18.60	m²							
	12	연수동	137-1	창고	컨테이너	2.6*1.9, H1.9	-	4.94	m²							
	13	연수동	137-1	고물적 치함	파이프 /함석	8.1*1.6, H1.0~2.9	-	12.96	m²	7) 0 0		1/1				
	14	연수동	137-1	담장	파이프 /함석	담장 (H=2.1~3.0), L=107.0M	-	-	-	김〇〇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1				
1	15	연수동	137-1	차양	파이프 /천막	5.9*2.9, H2.8	-	13.40	m²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1.0	ol v E	107 1	기 시 기	파이프	05.0.7.5 110.5		107.50	.2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01=101)	
	16	연수동	137-1	작업장	/비닐 /목재	25.0*7.5, H3.5	_	187.50	m²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최○○	_	임차인)	
17										강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17	연수동	137-1	주거지	조적조	10.5*3.0, H2.4	_	31.50	m²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연수구	ᆀᅁᆉ	
	1 (진구중	13/-1	부속실	/판넬	10.0*3.U, HZ.4	_	31.50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100	연수동	세입자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일련	물건	소	대지		물건	<u>1</u>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번호	셔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딘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1.0	어소드	107 1	주거지	조적조	10.7 112.0		07.41	2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M A I	المالية	
	18	연수동	137-1	ナクタ	/슬레이트	10.7*6.3, H3.0	-	67.41	mí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700	연수구	세입자	
										강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7100	OL A	וו סו דו	
	19	9 연수 동	107 1	사무실	조적조	2.2*5.0 110.2		10.47	2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00	연수구	세입자	
	19	연구동	137-1	사무결	/함석	3.3*5.9, H2.3	_	19.47	m²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4	1/4	71.	인천광역시	0]=]0]	
1						3.3*5.9, H2.3 -				강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김○○	남구 주안동	임차인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20	연수동	137-1	화장실	조적조	1.1*1.5, H1.8	_	1.65	m²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연수구	세입자	
	20	인구경	137-1	의 · 6 · 크	/판넬	1.1*1.5, 111.6		1.03	111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700	친구푸	게 합시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21	연수동	137-1	계단	콘크리트	1.5*2.2	-	3.30	m²							
	22	연수동	137-1	담장	합판 /파이프	담장 (H=1.2), L=7.4M	-	-	-	기00	연수구 연수동	1/1				
	23	연수동	137-1	장독	도자기	5EA	-	_	-							

일련	물건	소지	대지		물건	1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_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년 TI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14
	24	연수동	137-1	차양	파이프 /샌드위치 판넬	CAD 구적	-	29.90	m²							
	25	연수동	137-1	평상	목재	1.7*1.0, H0.5	_	1.70	m²							
	26	연수동	137-1	연탄보 관대	연탄 /목재판	1.0*0.5	_	_	-							
	27	연수동	137-1	외부보 일러	철판	1EA	-	_	-	기이이	연수구 연수동	1/1				
	28	연수동	137-1	내부출 입문	알루미늄 샷시	문 (H=2.0), L=2.0M	-	_	-							
	29 9	연수동	137-1	벽체	함석	増 (H=2.0), L=2.5M	_	-	-							
1	30	연수동	137-1	연탄보 관대	연탄 /목재판	1.5*1.0	-	_	-							
1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31	연수동	137-1	계량기	계량기	1EA		_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연수구1	MOJ7L	
	51	연구공	137-1	세당기	계당기	ILA	_	_	_ "	강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7)00	2十十1	세입자	
										강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32	연수동	137-1	디딤돌	콘크리트	1.0*0.5, H0.3	-	0.50	m²	7)00	연수구 연수동	1/1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33	연수동	137-1	계라기	수도계량기	1EA	_	_	_	강ㅇ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00	연수구	세입자	
	JJ	신구중	13/-1	71170/1	1 7/1/2/1	ILA	_		_	강ㅇ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4	1/4		· 인구구	게됩기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일련	물건	소지	대지		물건	<u>1</u>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번호	샤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딘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강0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0.4	ol v E	107 1	외부출	알루미늄	문 (H=2.0),				강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od & T	العالمالية	
	34	연수동	137-1	입문	샷시	L=0.9M	_	_	_	강ㅇ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	700	연수구	세입자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강ㅇㅇ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0.5	5 연수동 137-1	105.1	~1 ~1	샌드위치	담장 (H=2.0),				강ㅇ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	a) , =	, N o l l	
	35 9		담장	판넬	L=1.0M	_	_		강ㅇ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4	1/4	7)00	연수구	세입자		
1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36	연수동	137-1	평의자	목재	1EA	-	-	-							
	37	연수동	137-1	담장	함석	담장 (H=1.6), L=0.7M	-	_	-	7)00	연수구 연수동	1/1				
	38	연수동	137-1	에어컨 실외기	가전제품	1EA	-	_	-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1				
										강ㅇㅇ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1/4				
	20	ol & E	107 1	-i)	판넬/샌드	04.10 1110		0.04	2	강ㅇ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	71.00	ol v =	المالمال	
	39	연수동	137-1	창고	위치판넬	2.4*1.6, H1.8	_	3.84	m² -	강ㅇ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4	1/4	7)00	연수구	세입자	
										강ㅇ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1/4				

일련	물건	소져	대지		물건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_ [년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리 기 기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연수동	137-1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82.06	m²							
		연수동	137-1	건물 내부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116.90	m²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1				
		연수동	137-1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209.50	m²	김ㅇㅇ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1				
		연수동	137-1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48.22	m²	기00	연수구 연수동	1/1				
1		연수동	137-1	바닥 포장	철판포장	CAD 구적	-	22.67	m²	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1				
		연수동	137-1	적치장	자재적치 (정수기, 부품)	CAD 구적	-	38.46	m²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1				
		연수동	137-1	적치장	자재적치 (목재)	CAD 구적	-	37.42	m²	최이이	주소미확인	1/1				
		연수동	137-1	적치장	고물적치	CAD 구적	-	133.30	m²	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1				
		연수동	137-1	버드나무 미루나무		무-2, 양버즘나	-무-1,		주							
				소 계				1,213.3	m²							

일련	물건	소기	대지		물건	1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닌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4114
	1	연수동	137-17	작업장	시멘트블럭 /천막	12.0*5.8, H3.4	-	69.60	m²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	조00	_	임차인	
	2	연수동	137-17	창고	시멘트블럭 /천막	11.7*6.7, H2.7	_	78.39	m²	400	76 171 6 6 1 E 6 6	1/1	3.00		(창고임대)	
	3	연수동	137-17	자재적 치선반	파이프	11.3*7.6 H2.7	-	85.88	m²	조〇〇	주소미확인)	1/1				
2	4	연수동	137-17	담장	시멘트블럭	담장 (H=0.9), L=18.9M	-	_	-	조〇〇	주소미확인	1/1				
	5	연수동	137-17	창고	시멘트블럭	13.2*3.0, H2.0	_	39.60	m²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	조○○	-	임차인 (창고임대)	
	6	연수동	137-17	울타리	철재휀스	휀스 (H=0.8), L=5.3M	_	_								
	7	연수동	137-17	자재적 치선반	파이프	5.0*2.0 H2.7	-	10.00	m²	조ㅇㅇ	주소미확인	1/1				
	8	연수동	137-17	담장	시멘트블럭	담장 (H=1.0), L=16.3M	_	_								

일련	물건	소셔	대지		물건	<u>1</u>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겨]인	_H]_ <u>_</u>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딘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	연수동	137-17	작업장	샌드위치판 넬/천막	34.9*6.9, H3.5	_	240.81	m²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 /1	조○○		임차인	
	10	연수동	137-17	창고	목재/천막	10.4*6.7, H2.3	-	69.68	m²	됩 0 0	성구시 상성구 필상중 	1/1	<u> </u>	_	(창고임대)	
	11	연수동	137-17	출입문	철재프레임 /천막	문(H=2.1), L=2.5M	-	-	-	조〇〇	주소미확인	1/1				
	12	연수동	137-17	창고	목재/천막	16.0*6.0, H2.8	-	96.00	m²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	조○○	_	임차인 (창고임대)	
2	13	연수동	137-17	견사	철재/목재	2.0*1.7, H1.1	-	3.40	m²	조00	주소미확인	1/1				
	14	연수동	137-17	작업실	목재/천막	14.3*5.2, H3.4	_	74.36	m²							
	15	연수동	137-17	창고	시멘트블럭	4.7*2.0, H2.3	_	9.40	m²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	조〇〇	_	임차인 (창고임대)	
	16	연수동	137-17	외부 보일러 실	샌드위치 판넬	2.0*1.1, H1.8	-	2.20	m²						(0	
	17	연수동	137-17	견사	목재/천막	2.3*1.1, H0.8	_	2.53	m²	조〇〇	주소미확인	1/1				

일련	물건	소져	대지		물건	<u>1</u>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_B] <u>-</u>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u> </u>
	18	연수동	137-17	주거지	시멘트블럭 /목재	9.5*8.0, H3.0	-	76.00	m²							
	19	연수동	137-17	차양	목재/슬레 이트	9.8*1.3, H2.5	-	12.74	m²							
	20	연수동	137-17	간이 견사	플라스틱	1EA	_	_	-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				
	21	연수동	137-17	정수기	가전제품	1EA	-	-	-							
	22	연수동	137-17	가스통	철재	2EA	-	_	-							
	23	연수동	137-17	담장	슬레이트	담장 (H=1.7), L=12.7M	-	_	-							
	24	연수동	137-17	고철 더미	철재	2.4*1.2, H0.6	-	2.88	m²	미확인						
2	25	연수동	137-17	목재 더미	목재	2.5*2.3, H1.0	-	5.75		미확인						
	26	연수동	137-17	보조 지지주	철재	1EA	_	_	-	미확인						
	27	연수동	137-17	보조 지지주	철재	1EA	-	-	-	미확인						
		연수동	137-17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_	334.88	m²	김ㅇㅇ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				
		연수동	137-17			1 3, 뽕나무-2, 고 무-5,등나무-4, 여			주							
				 소 계			172.7 8	1,214.1	m²							

일련	물건	소	대지		물건	1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_ㅂ <u>] -</u>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닌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01.
	5	연수동	136-7	창고 (비닐하 우스)	파이프/ 비닐	15*5.1, H2.8	-	76.50	m²							
4	6	연수동	136-7	기타 (게이트)	철재	W.6*H2.0, 1EA	-	_	-	o]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				
	7	연수동	136-7	울타리	목재/ 그물망	휀스 (H=1.0), L=2.6M	-	-	-	122		-, -				
		연수동	136-7		3, 앵두나 매실나무-1	무-1, 살구나무 l	-2, 소	나무-2	주							
	8	연수동	137-16	주거지		((8.3+6.4)*2.9 /2)+(12.5*8.3) , H2.5		125.07	m²							
	9	연수동	137-16	교육실	세멘블럭조	6.7*6.8, H2.5		45.56	m²							
5	10	연수동	137-16	창고	샌드위치 판넬 /PE골판지	(2.6*2.7)+ (3.1 *4.3),H2.2	_	20.35	m²	마000	연수동	1/1				
	11	연수동	137-16	차양	PE골판지 /철재	1.5*2.4	_	3.60	m²	_		-				
	12	연수동	137-16		콘크리트	W0.4 H=0.8, L=9.8M	-	3.92	m²							
	10 연수동 5 11 연수동 12 연수동	연수동	137-16	사장	PE골판지/ 목재	CAD 구적	-	16.20	m²							
		연수동	137-16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51.52	m²							

일련	물건	소7	대지		물건	<u>1</u>		수량 변적)	rlo1		소유자			이해관계	인	עו ד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단위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14	연수동	산61-19	게이트	콘트리트/ 철재	W0.4*L4.0,H5.	-	-	-							
	15	연수동	산61-19	화장실	목재/슬레 이트	1.9*6.3, H2.3	_	11.97	m²							
	16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2.6*4.6, H3.1	-	11.96	m²							
6	17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4.0*4.4, H1.7	-	17.60	m²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O	16 연- 17 연- 18 연- 19 연-	연수동	산61-19	예배당	벽돌	CAD 구적	-	575.30	m²	1000	- 단선 단표 (단표)	1/1				
		연수동	산61-19	비가림 차양	파이프,비 닐/슬레이 트	2.8*3.0, H2.3	-	8.40	m²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콘크리트	W0.5*L3.6, H0.5	_	1.80	m²							
	21	연수동	산61-19	계단 (교회주 진입)	콘크리트	4.5*9.7, H0.2	-	43.65	m²							

일련	물건	소	대지		물건	1		-량 년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 단기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01-1
	22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기둥	콘크리트	0.35*0.35, H0.5(6EA)	-	0.74	m²							
	23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철재	봉 Ф0.05, L9.7, H0.9	-	_	-							
	24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철재	봉 Φ0.05, L9.7, H0.5	-	-	-							
	25	연수동	산61-19	전기등	철재	Ф0.05, Н3.1(2EA)	-	-	-							
	26	연수동	산61-19	십자가 받침대	콘크리트	1.7*1.7, H0.3	-	2.89	m²							
6	27	연수동	산61-19			0.3*0.4, H16.0	-	0.12	_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28	연수동	산61-19	십자가 바닥구 조물	EON'C 포장	(4.4*2.1)-(1.7* 1.7), L5.9	-	6.35	m²							
	29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3.0*4.6, H2.2	-	13.80	m²							
	30	연수동	산61-19	경사로 난간	스틸	봉 Φ0.05, L22.0, H0.85	_	_	-							
	31	연수동	산61-19	볼라드	석재	0.3*0.6, H0.15(2EA)	-	0.36	m²							
	32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철재	W0.2*L4.8, H0.5	-	0.96	m²							

일련	물건	소계	대지		물건	1		-량 ¹ 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_B] <u>-</u>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리 기 기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1-
	33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철재	W0.2*L3.25, H0.5	_	0.65	m²							
	34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W0.25*L3.6, H0.55	_	0.90	m²							
	35	연수동	산61-19	평상	목재	2.45*3.0, H0.25	-	1.35	m²							
	36	연수동	산61-19	돌평상	석재	1.5*1.5, H0.4	_	2.25	m²							
	37	연수동	산61-19	원형평 상	목재	D1.4, H0.45	_	1.54	m²							
6	6 38 연	연수동	산61-19	농구대	철재	H4.0(2EA)	_	-	_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연수동	산61-19	족구 지주대	철재	Ф0.1, Н2.4	_	-	_							
	40	연수동	산61-19	창고 (비닐 하우스)	철재/목재/ 천막	8.3*6.0, H3.3	-	49.80	m²							
	41	연수동	산61-19	부속 건물	세멘블럭조 /슬레이트	2.9*1.2 , H2.0	_	3.48	m²							
	42	연수동	산61-19	건물 (교육실)	콘크리트/ 슬레이트	7.9*14.1, H1.2~2.5	-	111.39	m²							

일련	물건	소7	재지		물건	<u>1</u>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нl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 편입	닌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ㅂ]
	43	연수동	산61-19	파고라	철재	3.0*6.5, H2.5	-	19.50	m²							
	44	연수동	산61-19	원형 의자	목재	10EA	_	_	-							
	45	연수동	산61-19	평상	철재/목재 /PE골판지	2.5*5.0, H2.8	-	12.50	m²							
	46	연수동	산61-19	식당	샌드위치판 넬/판넬	CAD구적	_	166.07	m²							
6	47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2.9*4.3, H2.2	_	12.47	m²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48	연수동	산61-19	배수로 (수로, 우수관)	석축, PE관	W0.6, L=16.4m(관 Ø400)	-	9.84	m²							
	49	연수동	산61-19	차양	PE골판지	2.4*7.0, H2.2	_	16.80	m²							
	50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1.8*2.3, H2.2	-	4.14	m²							
	51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콘크리트 /PE골판지 /슬레이트	2.2*3.8, H2.2	-	8.36	m²							

일련	물건	소계	대지		물긴	<u>H</u>		`량 ¹ 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_ㅂ]
번호	번호	샤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리 기 기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연수동	산61-19	담장	철재휀스	휀스 (H=1.9), L=4.5m	-	-	-							
	53	연수동	산61-19	담장	철재휀스	휀스 (H=1.2), L=41.9m	-	-	-							
	54	연수동	산61-19	게이트 (아치형)	철재	2.0*0.5, H2.5	-	1.00	m²							
	55	연수동	산61-19	난간	ST	H0.55, L=6.7m	_	-	-							
6	56	연수동	산61-19	계단	콘크리트	1.3*6.6*13단	-	8.58	m²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57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천막/ 슬레이트	5.5*3.4, H2.5	-	18.70	m²							
	58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슬레 이트	2.6*8.5, H2.2	-	22.10	m²							
	59	연수동	산61-19	창고	콘크리트/ 슬레이트	5.3*3.4, H2.1	-	18.02	m²							
	60	연수동	산61-19	건물(교 육실)	콘크리트/ 슬레이트	(5.9*7.4)+ (4.6 *25.5), H2.5	-	160.96	m²							

일련	물건	소7	대지		물건	<u> </u>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번호	넁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딘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1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 /PE골판지	0.9*1.7, H2.3	-	1.53	m²							
	63 연- 연-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 슬레이트	2.7*3.8, H2.5	_	10.26	m²							
		연수동	산61-19	창고 (비닐 하우스)	74 41	11.5*7.0, H3.8	-	80.50	m²	п] 000		1 /1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84.87	m²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	1/1				
6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블록포장	CAD 구적	-	879.50	m²							
O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화강석판석 포장	CAD 구적	-	10.97	m²							
		연수동	산61-19	앵두나두 진달래- 보리수니 비자나두 감나무-	'-10, 사철' 1, 회양목- 무-5, 조팝 '-19, 깨암' 11, 박테기'	나무-22 143, 철죽-1,539 -나무-2 나무-2, 장미-15 나무-1, 메타세회	9, 눈형 5, 가문 사이어-	ᆙ나무−21 -비나무− -15, 명지	, 주목 1, 꽃시 나무-	-24, 동백 -과나무-4, 5, 중국단	실나무-2, 고욤나무-5, 벚니나무-7, 측백나무-48, 쥐등 내추나무-9,목련-1, 참니 중-12, 참느릅나무-4, 사고 나무-3, 밤나무-3, 아카시어	통나무−1, ㅁ ├무−1, ㅁ ト나무−1,	, 눈주목- #화나무-4	l, 단풍나무 , 무궁화-1	·-34, 0, 뽕나무-5	ò,

일련	물건	소기	대지		물건	<u> 1</u>		녹량 면적)	LFOI		소유자			이해관계	인	иī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단위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
	64	연수동	산62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3.16*3.45, H2.0	-	10.90	m²							
	65	연수동	산62	주거지	샌드위치판 넬/판넬	4.7*9.7, H2.3 -(3번보일러실)	-	39.73	m²							
	66	연수동	산62	보일 러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1.5*1.7, H2.3	_	5.87	m²							
	67	연수동	산62	부속 예배당	샌드위치 판넬/판넬	6.6*8.4, H2.3	-	55.44	m²							
	68	연수동	산62	연결 건물	목재	2.4*1.0, H2.3	-	2.40	m²							
	69	연수동	산62	화장실+ 보일러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_	15.33	m²							
7	70	연수동	산62	창고	샌드위치 판넬/천막		_	45.46		연수구 연수동	1/1					
	71	연수동	산62	교회 예배당	샌드위치판 넬/천막	7.2*10.95, H2.3	-	78.84	m²							
	72	연수동	산62	창고	목재	2.0*1.0, H0.8	-	2.00	m²							
	73	연수동	산62	보일 러실	목재,벽돌/ 천막	1.25*1.76, H2.3	-	2.20	m²							
	74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철골재, 천막	9.3*6.0+2.1*3. 9, H2.3	-	63.99	m²							
	75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컨테이너	5.63*3.0, H2.3	-	16.89	m²							
	76	연수동	산62	실외보 일러실	목재/샌드 위치판넬	2.1*1.5, H2.3	-	3.15	m²							

일련	물건	소기	대지		물건	1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년 기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7	연수동	산62	담장	샌드위치 판넬	담장 (H=1.5), L=7.1M	-	-	_							
	78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샌드위치 판넬/천막	8.53*6.0, H2.3	_	51.18	m²							
	79	연수동	산62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	문 (H=1.6), L=4.0M	-	-	-							
	80	연수동	산62	담장	메쉬휀스	휀스 (H=1.6), L=91.62M	-	-	-							
	81	연수동	산62	차고	샌드위치 판넬/판넬	5.0*3.7	-	18.50	m²							
7	82	연수동	산62	집 정문	판델	문 (H=1.8), L=1.0M	-	-	-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83	연수동	산62	담장	샌드위치 판넬	담장 (H=1.8), L=5.63M	-	-	-							
	84	연수동	산62	축사	목재	1.5*4.3 + 0.5*1.0, H1.2	-	6.95	m²							
	85	연수동	산62	견사	샌드위치판 넬/판넬	1.2*2.0, H1.0	-	2.40	m²							
	86	연수동	산62	견사경 계	메쉬휀스	휀스 (H=1.2), L=5.5M	-	-	-							
	87	연수동	산62	부속생 활실	컨테이너	3.4*3.0, H2.5	-	10.20	m²							

일련	물건	소기	대지	물건				-량 ¹ 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_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L'TI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88	연수동	산62	보일러 실	샌드위치판 넬	3.25*0.7	-	2.28	m²										
	89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샌드위치판 넬/판넬	4.0*3.0, H2.5	_	12.00	m²	대0000									
	90	연수동	산62	창고	샌드위치 판넬	3.0*2.5, H1.5	-	7.50	m²										
	91	연수동	산62	십자가 철탑	철탑	2.0*2.0, H8.0	-	4.00	m²										
	92	연수동	산62	담장	함석휀스	담장 (H=1.6), L=7.3M	-	-	-										
	93	연수동	산62	울타리	메쉬휀스	휀스 (H=1.2M), L=37.88M	-	_	-		연수구 연수동	1/1							
7	94	연수동	산62	차양 (통로)	목재, 플라 스틱골판	CAD 구적, H2.3	-	60.85	m² m²			m²							
	95	연수동	산62	차양 (건물 입구)	목재, 플라 스틱골판	5.63*1.2, H2.3	_	6.76											
		연수동	산62	바닥	CON'C 포장	CAD 구적	-	198.05	m²										
		연수동	산62	바닥	블럭포장	CAD 구적	_	56.57	m²										
		연수동	산62	견사 바닥	블럭포장	CAD 구적	-	11.34	m²										
		연수동	산62	사찰나무	1,	무-2, 개나리-1 무-1, 포도나무					-국나무-1, 사철나무-1, - - -	복숭아나	무-1, 모고	·나무-1, 뽕	-나무-2,				

일련	물건	소7	대지		물건	1		-량 년적)	단위		소유자		ı	이해관계	인	нl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딘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96	연수동	산64-2	창고	파이프/천 막	6.0*5.8, H2.0	-	34.80	m²							
	97	연수동	산64-2	창고	파이프, 철망 /슬레이트	4.8*4.8, H1.7	-	23.04	m²							
	98	연수동	산64-2	울타리	철재	휀스 (H=1.1~1.3), L=-40.0M	-	_	_	대0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8		연수동	산64-2	바닥 포장	CON'C포 장	CAD 구적	-	77.63	m²							
		연수동	산64-2	바닥 포장	블록포장	CAD 구적	-	146.84	m²							
		연수동	산64-2	목련나무 두충나무	'-4, 가중나	-무-2 -나무-1, 앵두나					나무-26, 단풍나무-14, 7 일락나무-1, 자두나무-1,				-3,	
	99	연수동	산64-3	주거지 및 사찰	목재 /슬레이트	CAD 구적	-	164.29	m²							
	100	연수동	산64-3	건물외 벽체	목재	L=6.9	-	_	-							
9	101	연수동	산64-3	차양	목재 /슬레이트	3.0*6.9, H2.2	-	20.70	m²	김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102	연수동	산64-3	창고문	ST	Φ0.025, L2.5, H1.3	-	-	-							
l l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2.0*2.2, H2.3		4.40	m²							

일련	물건	소7	대지		물긴	<u>4</u>		수량 변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번호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닌귀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u> </u>
	104	연수동	산64-3	석등	석재	0.6*0.6, H1.8	-		-							
	105	연수동	산64-3	계단 (문수암 입구)	화강석 및 블럭포장	W1.5, L30.0, H0.5M	-	45.00	m²							
	106	연수동	산64-3	입구표 지석	화강석	1.2*1.3, H3.0	-	1.56	m²	김00						
	107	연수동	산64-3	계단 (표지석 앞)	화강석 및 블럭포장	W3.0*L1.8. H0.5M	_	5.40	m²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블럭포장	CAD 구적	-	125.80	m²			1 /1				
9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화강석판석 포장	CAD 구적	-	3.70	m²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1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55.40	m²							
		연수동	산64-3	두릅-10 동백나무 앵두나무 주목-1, 장미-4,; 보리수-	2, 사철니 1, 감나무 사철나무-2 황금사철-4 1, 개나리-	[2, 홍자단-3, 소 +무-2, 모과나무 4, 블루베리-2 32, 재피나무-1, 0,엄나무-3,벚나 7, 나무수국-6, 3, 꽃사과나무	-11, ⁴ , 철죽 회양목 무-4, ⁴ 살구나	뽕나무-3 나무-4 -16, 목련-4	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87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4. 24.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인천광역시회

등록번호	C1 = 11 CH	사무소	ţ	변 경 사 :	항	변경	T 21 21
(등록연월일)	- 단체명 -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주관과
제2014-0-인천 광역시-24호 (2014. 9. 3.)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 인천문화회관 4층(숭의동)	대표자	최제형	김사연	대표자 변경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354호	주식회사 이언시스템 이원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0번길 6-1(만수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879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9. 4. 23.(화) 14: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18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7작품 / 부결 : 1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9년도	제3	3차 경	건축물미술작품 심 으	J결	과	
위치 및 건물명	연번	종류	작 품 명		결과 부결	비고
1. 중구 중산동 1873-20번지	1	조각	Memory-바람을 그리다	0		
(리베라베리움 영종)	2	조각	Memory-마음에 그리다	0		
2. 중구 중산동 1873-8번지	3	조각	생명 Vision	0		
	4	회화	돌아서니 옥구슬이 있네	0		
	5	회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0	
	6	회화	나무에 가려진 채 찬비만 내린다		0	
	7	회화	전기줄에는 참새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0	
	8	회화	숲에 사는 뻐꾸기는 어디 갔는가?		0	
	9	회화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으리		0	
	10	회화	봄이 오면 꽃이 다시 피듯이		0	
3. 중구 운서동 3098-2	11	회화	어머니는 고등어를 좋아 하셨지		0	
	12	회화	이슬비 내리는 버스정거장에 나는 서 있다	0		
	13	회화	COSMOS-야경		0	
	14	회화	Spirit-walk to heaven		0	
	15	회화	run-빛 속으로	0		
	16	회화	take a walk-NewYork, NewYork, NewYork2017		0	
	17	회화	run-봄	0		
	18	회화	우주-take a walk		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워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록 분
제2019-0- 인천광역시-11 호	양심이는 내친구	손혁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46(작전동)	○ 아이들을 위한 양심캠페인 (청소년 범죄예방)	2019. 4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88호

인천광역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10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에서 우리시에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인천광역시금고

가. 1금고 : ㈜신한은행

나. 2금고 : 농협은행㈜

2. 약정기간 : 2019. 1. 1. ~ 2022. 12. 31. (4년)

3. 협력사업 출연금 총액

가. 1금고(신한은행): 금120,600,000,000원

나. 2금고(농협은행) : 금13,600,000,000원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7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변경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함
- 나.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실, 전화 032-440-2392, 팩스 032-440-8628, 이메일 tanasp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u>지방분권</u>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u>자치분권</u>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 시 <u>지방분권</u>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자치분권</u>
제2조(분과위원회 설치) (생략) 1. ~ 5.(생략)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u>지방분권</u>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설치) (현행과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u>자치분권</u>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8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의 내용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 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실, 전화 : 032-440-2392, 팩스 032-440-8628, 이메일 tanasp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폐지 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9호

「인천광역시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의견수렴) 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폐지안 의견수렴

1. 폐지이유

- 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인천광역시 공익근무 요원 복제규정」(1999.6.4.제정, 2005.6.7.개정) 이후 규정을 존속·유지 하였 으나
- 나. 병무청「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제814호 2008.10.8. 제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복제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기능 상실된 「인천광역시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을 폐지 함.
- 나. 발령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비상대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팩스 : 032-440-8756, 전자메일 : nabang6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 폐지안

인천광역시 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0호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거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보호관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인권침해구제의 신청 · 접수 · 처리에 대한 절차규정 마련
- 다. 사건의 조사절차 및 조사중지의 요건 마련
- 라. 결과통지 및 후속조치
- 마. 조사기록 보존 및 이의신청
- 바. 보호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 사. 각 절차에 따른 별지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혁신담당관, 전화: 440-16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조례 제2조제1호의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조례 제5조제1항의 차별을 받은 사유로 인권부서의 장에게 상담, 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워과 직원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인권보호관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의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3인 이내의 상임 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보호관을 두며, 합의제로 운영한다.

- ② 상임 보호관은 공무원(임기제, 선택임기제 등)으로서「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된다.
- ③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 인권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근무경험자로서 해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 단체에서 인권관련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④ 보호관은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4조(보호관회의) ① 제3조제1항의 합의제기구로서 보호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두며, 상임 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간사는 상임 보호관으로 한다.
 - ③ 회의는 의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비상임 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인권침해 등의 결정은 회의의 재적보호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 ⑥ 회의는 인권보호 및 구제업무와 관련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관 직무) ① 보호관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의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조례 제11조의 인권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1.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등이 아닌 경우
 -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3.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및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회의에서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5.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하여 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회의 결정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6. 그 밖에 신청내용이 명백히 거짓 또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제6조(보호관의 제척 등) ① 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 결정에서 제척된다.
 -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청인·피해자·피신청인은 보호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만, 의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의의결로 결정한다.
- ③ 보호관이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침해 등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이를 보존할 수 있다.
 - ④ 신청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부서(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관련부서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① 인권부서의 장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 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 제10조(접수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인권부서의 장은 접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권부서의 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11조(신청의 기각) ① 회의는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회의는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 중 해결) 상임 보호관은 조사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회의가 인권침해 등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문서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상임 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있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처리기간) ① 신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의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사건의 조사 등) ① 조사업무는 상임 보호관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다른 보호관,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신청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복수로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 ③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 각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 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 ⑤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 진술은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⑦ 상임 보호관 및 조사인력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⑧ 상임 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

고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중지)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회 의의 의결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신청사건은 사건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결과통지 및 후속조치) 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지체없이 시장(인권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인권부서의 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사기록 보존) ① 상임 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

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일체는 사건 종결 후 인권부서에 이관 하여 보존 관리한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회의에 상정한다.
 - ④ 인권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원사항) 보호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회의에 참여한 비상임 보호관과 외부전문가 등에게 수당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총2면중 1면)
접수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	(자)			
이 름 생	년월일*		성별	국적
주 소	,			
전화번호(핸드폰)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	경우 작성)			
이 름 생	년월일*		성별	국적
주 소	j		ii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전화번호(핸드폰)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지 여부 (신청	인과 피히		-성)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알고	!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	:다()
・모르고 있다()	• 알고	는 있으니	사 조사를 원하는지는	는 모르겠다 ()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	l한 당사자	-		
이 름		소 속		
연락처				
피해자가 입은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 내용어]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성을 제기호	했는지 여부	
│	없음 구제기과에 ⁻	구제적하니	· 주정적차를 제기형	됐는지 여부
	없음	1 . 11 = 2 1	- 0 E/1E / 1/1/	x = 1 11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 □ 언제 () □		기비국 /)
□ 언제 () □ • 인천광역시에 진정신청을 한 적		근민 모 (,
	없음			
• 있다면 언제, 어느 부서, 누구의	이름으로 ㅎ	하였는지?		
□ 언제 () □] 부서 () 🗌 누구 (()

- 92 -

해자가 입은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 내용	
일 시	장 소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우 별지 기재)	
[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에 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없음
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없음
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없음 (서명 또는 인)
부서류 : □ 있음 (서류명 글 작성의 경우 (신청인이 기 록 자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부서류 : □ 있음 (서류명 '술 작성의 경우 (신청인이 기 록 자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류 : □ 있음 (서류명 술 작성의 경우 (신청인이 기 록 자 신청서는 점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직 성명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	(서명 또는 인) 다.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선정신고서

(총2면중 1면)

 (접수변	<u> </u> 호 :)			
	성 명	(1)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대 표	성 명	(1)	생년월일	성별	
자	주 소				
	성 명	(1)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인천광역시장

붙임: 신청인 명단 1부.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중 2면)

						(0260 26)
일련 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서명·날인 또는 지장	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부서 및 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적 효력이 생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	번호					
اه اخ اد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접 수	- 일		년	월	일	
접 수	-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인천광역시 인권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440-1657~8 팩스 032-440-8714 전자우편 irights@korea.kr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10mm×148mm(보존용지(2종) 54g/m²)

제1740호 인 전 광 역 시 보

2019. 4. 29.(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접수대장

사건번호 정소이기			신	청 인		사건	사건명	비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번호	사건병	비끄

[별지 제5호 서식]

보존	연한
	년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성 명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처 리 사 항	처 리 일	내 용 비고
처 리			
	종 결 일		

	인권도	L호관	
종결 확인	담 당	팀 장	과 장
확인			

	[별ス	제6호	서식
--	-----	-----	----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주	소								
	전화	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T								
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결	정	통 지	서	
의 안 번 호			사 건	. 번 호	
사건명					
	□ 신청인		조사대상	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	성 명			주	소
결정내용	□ 각하결정 □ 기계	각결정 □	조사중해?	결 □ 시경	성권고결정
-1 -1 .1 A					
결정이유					
	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음을 통지합니다.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	월 일		
		인천국	광역시장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 서면으로 이의신청 을	을 할 수		부터 149	일 이내 에 인천광역시

[별지 제8호 서식]											
신청 취하서											
사 건 번 호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	<u>ই</u>									
위 사건	의 신청	을 추	부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제 호 수 신		
제 목		
사건 	<u> </u>	
사	건 명	
자료 제출	기관(부서)또는 시설·단체명	
대상	주 소	
	사료제출의 기 유	
제출	해야 할 자료	
제출	·해야할 기간	. 까지
제출	·해야할 장소	
	비고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사건 [사건번호 (접수번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니 인천광역시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 자료 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출석 바랍니다.

1.

2.

3

출석하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임 인권보호관 (전화번호 :)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별지 제11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속 : 소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와 직명)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위의 사람은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답 :

문 :

답 :

(후면)

문 : 추가할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은 문답내용을 진술인에게 열람토록 하거나 또는 읽어 들려주었던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확인함으로 간인 후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인권보호관 직 (인) 성명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2호 시	1식]					
	질		문	서		
제 목						
질 문 사 항			답	변 사 항		
	20 1	년 월 일			20	년 월 일
		귀하		인경	천광역시 인권보	호관 귀하
인천광역시 인	권보호관 성명	(인)) 7	기관명 : 직	성명	(인)
	하여 20 을 대외에 누설하 바랍니다.			가음과 같이 답	급변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사건조사결과서									
사건제목 (사건번호)										
신 청 인										
피 해 자										
피신청인	접수일									

- 1. 신청요지(신명조 13포인트, 굵게) 본문(신명조 13포인트)
- 2. 조사방법과 경과

가. 날짜 : 조사방법과 경과(신명조 13포인트)

- 3. 쟁점
- 4. 관련 규정
- 5. 당사자 등의 주장
- 6. 인정사실 및 판단
 - i) 단일 쟁점일 경우
 - 가. 인정사실
 - 나. 판단
 - ii) 복합 쟁점일 경우
 - 가. 쟁점
 - 1) 인정사실
 - 2) 판단
- 7. 전문가 의견
- 8. 결론
 - 가. 적용법규
 - 나. 이유
 - 다. 주문

〈붙임〉

조사자 인권보호관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4호 서식]

조 사 기 록 목 록										
	7] 1] 7]	지서(제초)		확인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작성자 (제출자)	담당 직원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별지 제15호 서식]

조사기록관리대장

			-일자 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약	성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정권고 결정				담 당	
연 번	접수일자				처리	이의신청 결과		A))	처 리	이의신청 결과		인 권	비고	
		(6) (22)		일 자	내 용	일 자	처 리 내 용	일 자	내 용	일자	처 리 내 용	보호관		

[별지 제]	[별지 제1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건 (접수]번호 -번호)							
사	건명							
이의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통 <i>ス</i> 날	받은 짜		년	월	일			
	받은 항	z	ト하결정 □ プ	각결정 □	시정권고	결정		
이 <i>의</i> 내	※ 필요시 별지작성이의신청내 용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71.2	VI =1 vII =		원결	 .정	이 의 신 청 인			د د	-1 -1	이의				
접수	사건번호	사건명								인 권	처리	처리점	<u></u> 크과	비고
일자	(접수번호)		결정일	결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보호관	기한	결정일	결과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8호	.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의안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시 시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문의할 곳	당당자 : 전화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진술의 녹음・녹화 동의서							
사 건 (접수	사 건 번 호 (접수번호)							
사	사건명							
기스기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진술자	주 소			전:	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녹화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관련법령 발췌사항

□「행정조사기본법」

○ 제2조(정의)

- 1. "<u>행정조사</u>"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 거나 <u>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u> 행 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행정기관"이란 <u>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u>)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O 제17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O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96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O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치매 가정의 복 지 증진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6조 치매관리사업 중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5호,6호 신설)
- 나.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 조치사항 등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easuga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
- 6.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제6조(치매관리사업)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u>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u>
	의 지원방안
<u> <신 설></u>	6.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 과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
<u>5</u> . (생 략)	<u>7</u> . (현행 제5호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 1. 치매의 예방 ·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
 - 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
 - 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7. 치매화자가족에 대한 지원
 -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 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2. 미첨부 사유

○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전으로 사업 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진 예정

4. 작성자

ㅇ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97호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0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 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8조(과징금 처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 제8조(과징금의 납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 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 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 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과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 개별

기준의 제3호서목, 제10호바목 및 제17호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과징금의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 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가 폐지될 경우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
- 4. 작성자 : 건설교통국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98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및 인용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서명칭 정비(안 제11조)
 - 계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
 - 도시계획과 → 도시균형계획과
 - 광역교통정책관 → 교통정책과

- 인용 조례 제명 정비(안 제20조)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다. 합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균형계획과,"로, "광역교통정책관"을 "도시정책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산업진	③
흥과,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균형
도시경관과, 시설계획과, 토지정	계획과,
보과, 환경정책과, <u>광역교통정책</u>	도시정책과
관,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	
과, 공원녹지과, 수질환경과, 문	
화재과 등 시 소속 산업단지 개	
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과 특례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협의된 관계기관 소속	
파견 직원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① 위원회 등의 위	제20조(수당) ①
원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	
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u>「인천광역시</u>	「인천광역시
<u>위원회실비변상조례」</u> 에 따라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례
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21조(교통국) ○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6조 (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 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 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 계획국을 둔다.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택시화물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화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관리과장,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① 도시균형계획국에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계획과장, 건축계획과장, 도시경관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균형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व्ये धो	지급	조례 1
--	-------	-----	----	---	---------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금번 개정안은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조례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금번 개정안은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조례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균형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99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인 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교통영 향평가심의위원회'로 용어를 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0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9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	제7조(대행자지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	
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	교통영향평가
<u>·개선대책수립대행자</u> 에게 교	<u>대행자</u>
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3</u>	<u>같은 법 시행령 제13</u>
<u>조의5</u> 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	<u>조의6</u>
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u>교통영</u>	교통영
<u>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u> 의 심	<u>향평가심의위원회</u>
의를 거쳐야 한다.	<u>.</u>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은 별지 작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 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 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 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00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 정비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3조제2항)
-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안 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0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법 제36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구배"를 "경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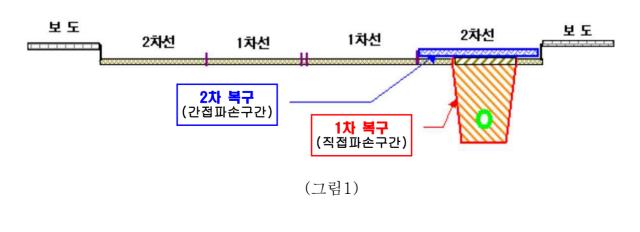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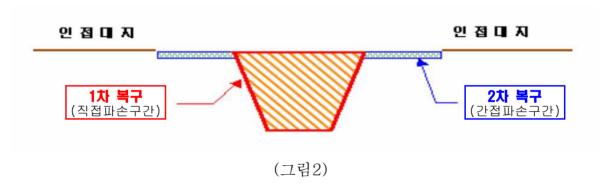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워칙으로 한다.
 -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 로 모어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복구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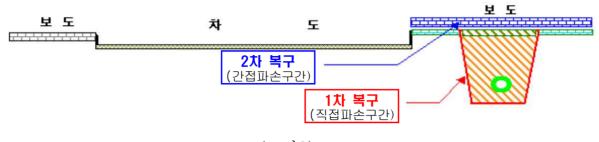


-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 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 마. 1차 · 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 바. 복구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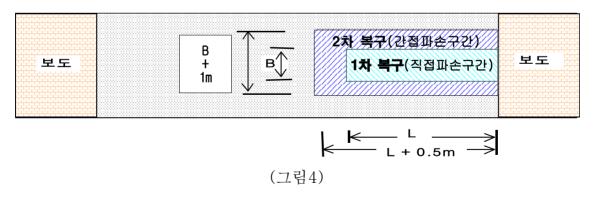
-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3)

-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 이하)
 - 바. 복구표준단면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개 정 아 혅 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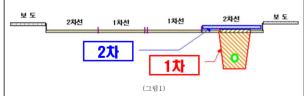
[별표 1]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 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 로 한다.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 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 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 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복구표준단면



-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 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 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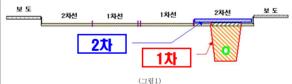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 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 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 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 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복구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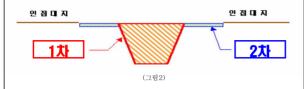
-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u>구배</u>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나. 굴착표준 최적<u>경사</u>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하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 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혅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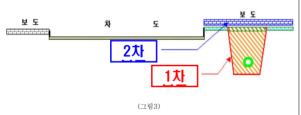
-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 바. 복구표준단면



-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나. 굴착표준 최적<mark>구배는</mark>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하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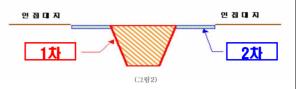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 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다.
-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복구표준단면



-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 하다
 -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 로 하다
 -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다
 -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 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연장 20m 이하)

개 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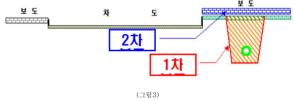
-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 바. 복구표준단면



-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 하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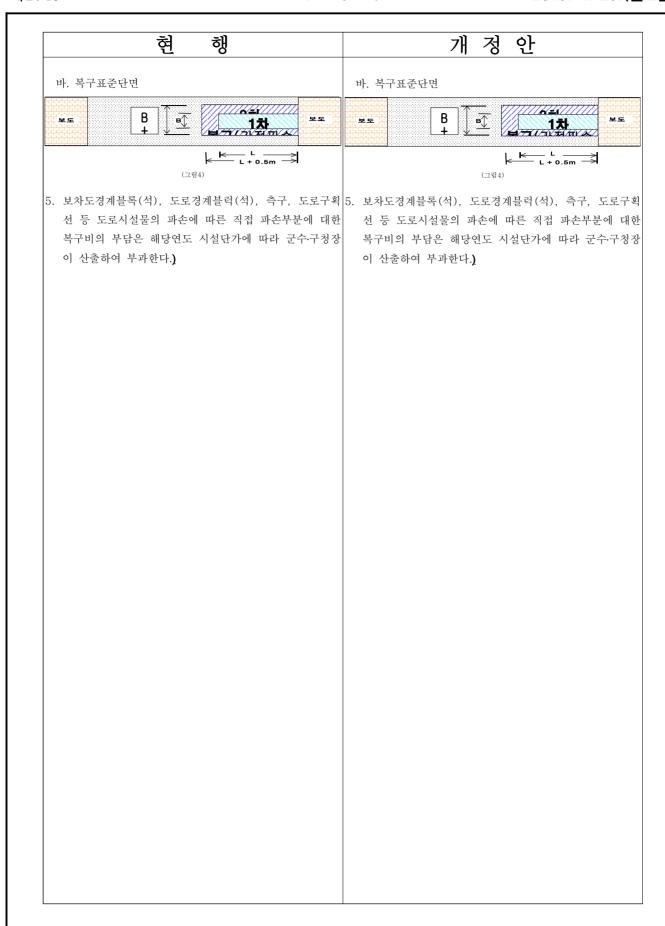
-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 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다.
 -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복구표준단면



-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 가. 굴착표준 최적<mark>구배는</mark>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하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다.
 -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 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연장 20m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②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가 <u>법 제36조</u> 에	법 제35조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			
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			
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			
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			
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		
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			
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			
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			
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굴착표준 최적 <u>구배</u> 와 복구비	1 <u>경사</u>		
용 산출방법: 별표 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관계법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법」

-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행의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 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

- •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 에 관한 정보
-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해당 조례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 등
-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유세종

기 타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19 - 186 호

직인(인장) 폐기 공고

인천교통공사 사무관리내규 제21조 의거 인천교통공사 직인 및 특수인장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폐 기 일 : 2019년 5월 1일

2. 사 유 : 의정부경천철사업단 폐지

3. 인장명 및 인영

구분	인장명	인영	비고
직인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의인		폐기일 - 2019.5.1
특수 인장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천철사업단분임계약담당인	は を は の の の は の に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の は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は る に 。 に る 。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に る 。 に る 。 に る に る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に 。 。 に 。 。 。 。 。 。 。 。 。 。 。 。 。	